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검 토 보 고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14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4
2. 주요 조문별 검토	9
가. 정의	9
나.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12
다.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원 등	15
라.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19
마. 과태료	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상징성·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의 성장과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외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생활소비재산업이 새로운 IT기술, 콘텐츠,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 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격과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등 산업의 수명주기 상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중저가품과 대비할 때는 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의 고가품과 대비할 때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샌

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도약 혹은 쇠퇴라는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시점임. 이에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생활소비재를 지정할 수 있고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그리고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첨단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기본계획·시행계획)과 함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원, 산업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 등 각 분야별 정부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제3장 생활소비재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등	제7조(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제8조(혁신클러스터의 지원) 제9조(통계작성·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제4장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10조(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우수생활소비재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제12조(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 제13조(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제16조(생활소비재기업 및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제5장 보칙	제1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19조(과태료)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생활소비재¹⁾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이나 신흥국의 성장 및 한류 확산 등으로 국내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산업의 국내 성장과 관련하여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생활소비재의 국내생산 규모는 2015년 약 102.8조원에서 2021년 103.4조원으로 연평균 0.1% 소폭 증가에 그쳤고,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 생활소비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1%에서 2021년 5.0%로 하락하는 등 국내에서는 산업 자체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1) 생활소비재 정의(제정안 제2조)

- “생활소비재”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구, 가방, 주얼리, 문구, 소형가전, 시계, 신발, 악기, 안경, 완구, 운동레저용품,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나. 그 밖에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제품 및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 2] 생활소비재산업의 총산출액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활소비재 산업	102.7 (6.1%)	103.1 (6.1%)	100.7 (5.6%)	103.5 (5.6%)	97.1 (5.4%)	95.6 (5.5%)	103.4 (5.0%)
제조업	1,697	1,688	1,797	1,854	1,806	1,741	2,064

※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주: ()안은 제조업 대비 생활소비재산업 비중

이는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인건비 등 국내 생산 여건 악화, 해외 생산 확대 등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재 수요 둔화에 기인하여 생활소비재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임.

또한, 통계청의 2022년도 전국사업체 조사에 따른 101,687개의 생활 소비재산업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0.2% 수준인 반면,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의 91.1%(1~4인 78.3%, 5~9인 12.9%)를 차지하여 소규모 영세 업체가 절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생활소비재산업의 사업체별 종사자 수 비중

구분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비중	78.3%	12.9%	7.2%	0.8%	0.6%	0.2%	0.0%

※ 자료: 산업연구원, 2023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 2023.8~11.

아울러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 산업경쟁력강화” 사업 및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사업을 추진 중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 사업 및 “의류제조 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섬유 패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일부 사업²⁾을 추진 중이나,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이나 분야별 지원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임.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분야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범위에 개발·생산 외에 유통 또는 판매업을 포함할지 여부, 우수생활소비재 선정 시 관련 기준에 관한 명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 여부 및 생활소비재 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2024년도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 예산 현황

-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사업: 48억 4,400만원(산업통상자원부)
-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사업: 180억 9,100만원(산업통상자원부)
-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 사업: 4억 3,600만원(종로구)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6억 3,100만원(중랑구)
- 섬유 패션 산업 경쟁력 강화: 9억 3,500만원(경기도)

참고로, 제20대 및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³⁾.

3) 제20대 국회 :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제21대 국회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 (안 제2조)

제정안은 “생활소비재”를 일상생활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가구, 가방, 귀금속, 문구, 미용기기, 소형가전,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에 해당하는 제품을 나열하고,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 “생활소비재기업”, “생활소비재산업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표 4] 제정안 조문내용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비재”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구, 가방, 주얼리, 문구, 소형가전, 시계, 신발, 악기, 안경, 완구, 운동레저용품,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나. 그 밖에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제품 및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활소비재산업”이란 생활소비재를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생활소비재기업”이란 생활소비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란 국가가 생활소비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오인·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혼란과 불측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의조항을 두어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기술하고 적용범위를 특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생활소비재를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동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생활소비재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소비재의 종류에 가구, 문구, 신발,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생활소비재를 직접 기획·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에 비해 사업 연관성이 낮은 순수 유통·판매기업⁴⁾까지 대상 산업에 포함할 경우 법률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4) 위생용품 등 생활소비재의 일부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각종 마트 및 문구점·슈퍼마켓·편의점 등

따라서,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 도모라는 제정안의 목적과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정책적 지원대상을 관련 핵심 산업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생활소비재산업”에 생활소비재의 유통·판매업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나.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안 제6조)

제정안은 생활소비재산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표 6] 제정안 조문내용

제 정 안
제6조(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①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의 취지는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정책과정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야별 전문가나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기본·시행계획 및

각종 지원정책의 수립·집행 시 해당 분야의 현안 청취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다만,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심의대상,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정원의 상한(20명)만 규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회 설치에 관한 타 입법례⁵⁾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위원 요건이나 자격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위원요건, 위원임기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현황

위원회	근거법률	법률사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법 §25	- 심의사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 위원정수, 당연직·위촉위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7	- 심의사항, 위원장 및 간사, 위원임기, 위원정수, 위원요건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8	- 심의사항, 위원장 및 간사, 위원임기, 위원정수, 위촉위원, 의사·의결정족수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방폐물유치지역법 §3	- 심의사항, 위원장 및 간사, 위원임기, 위원정수, 당연직·위촉위원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⁶⁾에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생활소비재 산업발전위원회와 같은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산업부 내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원 등 (안 제10조 및 제11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 및 디자인 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술 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디자인·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표 7] 제정안 조문내용

제 정 안
제10조(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 및 디자인 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지 아니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9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제품인 경우 제조자를, 서비스인 경우 공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업무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 지원사업을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우수생활소비재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⑨ 그 밖에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기준·절차·표시와 수수료 징수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수생활소비재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획·디자인·제조·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3. 기술지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4.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 지원
5. 그 밖에 우수생활소비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과 제2항의 지원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소비재산업 내에 우수제품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우수생활소비재”에 대한 유인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첫째, 제정안은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품질 및 디자인 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수생활소비재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 지원 등이 주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소비자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건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중요해 보임.

따라서 제정안의 요건 중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보이므로, 관련 분야의 수상 이력이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우수생활소비재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제정안은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우수생활소비재기업의 정의 자체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함⁷⁾으로써 산업의 실태조사나 정책적 지원 등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지원 등의 대상을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조문 해석상 중견·중소기업 외에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우수생활소비재 사업자 중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한정되는 “우수생활소비재를 생산하는 생활소비재기업”으로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7)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생활소비재기업”이란 생활소비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8)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소비재기업에 대기업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라.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안 제12조 및 제13조)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활소비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 훈련이나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고용 안정, 생활소비재 관련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표 7] 제정안 조문내용

제 정 안
제12조(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3. 퇴직근로자 등 생활소비재 관련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 4.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 등을 통해 생활소비재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소비재산업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직업 훈련이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고, 인력 확보 관련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하는 등 범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 볼 때,

유사 입법례⁹⁾와 같이 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그 법률 제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022년 2월 시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마. 과태료 (안 제19조)

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생활소비재의 인증을 받거나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우수생활소비재의 표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표 9] 제정안 조문내용

제 정 안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생활소비재의 표시를 사용한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허위로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을 받거나 우수생활소비재의 표시를 한 자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게 되는 경우 우수생활소비재 제도 자체가 유효하게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그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생활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서 우수생활소비재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전국민에게 경제적 피해 등을 입힐 수 있으므로,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10] 과태료 부과 관련 타 입법례

법률명	벌칙	위반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한 자 ·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500만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친화 기업 인증을 받은 자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과태료 500만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인증을 받은 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과태료 300만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 기술 인증을 받은 자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문 의 처

02)6788-5466